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10호 2015. 11. 25.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53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1011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4

거창군 공고 제2015-1015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거창군 공고 제2015-10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거창군 공고 제2015-1020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0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23호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 38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흥덕길 33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10호 2015. 11. 25. (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53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5-1011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4
- 거창군 공고 제2015-1015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거창군 공고 제2015-101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4
- 거창군 공고 제2015-1020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0
-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23호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 38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흥덕길 33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5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1길 13-9	2009-04-01	2015-11-23	강변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7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용길 57-135	2009-04-01	2015-11-23	마을 앞 황강 냇물에서 사금이 나왔고 용이 놀았다는 용소가 있어 붙여진 자연 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696-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36	2009-04-01	2015-11-23	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33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3079	2009-07-02	2015-11-23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22-122	2009-04-01	2015-11-23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아홉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890-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웅양로 959-19	2009-12-28	2015-11-23	행정구역 웅양을 이용하여 웅양로로 명명
7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71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한기2길 378	2009-04-01	2015-11-23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국사봉 남쪽 기슭에 자리한 한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30-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21	2009-04-01	2015-11-23	행정구역명 모동을 이용하여 모동길로 명명
9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99-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흥덕길 33	2012-05-22	2015-11-23	대표기업명칭(흥덕소우테크놀러지) 반영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8-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방촌길 76-6	2009-04-01	2015-11-23	방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 군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3 - 111호선) 사 업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1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11. 19.

##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교통 시설 (도로)	마상리 (소로3-1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조	마상	소로	3	111	121.0	6.0	795	가조면 마상리 321-16번지 ~ 가조면 마상리 2-22번지	경고115호 ('79.05.24.)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7.12.31.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0,765	795					
1	가조면 마상리	2-18	도	2779	29	-	거창군			
2	"	321-5	전	714	17	가조면 마상리 107	이동석			
3	"	459-3	대	612	133	가조면 마상5길 74	가조제일교회			
4	"	460-3	대	836	56	가조면 마상5길 74	가조제일교회			
5	"	461-3	전	197	156	가조면 용전1길 196	이현권			
6	"	461-1	대	448	5	가조면 월포2길 3-28	정근시			
7	"	465	과	2642	29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1, 106동 1303호	이영준			
8	"	2-22	도	848	6	-	거창군			
9	"	321-13	전	585	1	합천군 묘산면 산제길 91	박평제 외1 인			
10	"	321-16	전	109	8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21길 3, 106동 1202호	김창호			
11	"	459-5	대	258	10	가조면 마상5길 74	가조제일교회			
12	"	460-4	대	50	2	가조면 마상5길 74	가조제일교회			
13	"	461-2	전	282	7	가조면 용전1길 196	이현권			
14	"	461	대	405	2	가조면 월포2길 3-30	최정수			

6.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5),FAX(055-940-3579), E-mail : qudwnsa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주민투표 조례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 (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변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용 반영
  -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조례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정비 (별지 제3호서식)
  - 조례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주민등록번호란 설명' 삭제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 용어순화 (안 제14조) : '자' → '사람'
- 지번 대신 도로명 주소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 '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3169], 전화[940-3184] 또는 E-mail[dlwhdthq@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1.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주민투표 조례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 (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변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내용 반영
  -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조례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정비 (별지 제3호서식)
  - 조례의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작성요령 '주민등록번호란 설명' 삭제함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 용어순화 (안 제14조) : '자' → '사람'
- 지번 대신 도로명 주소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 '지번' → '도로명과 건물번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4조, 제24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20일
    - (가) 예고기간 : 2015. 11. 20. ~ 12. 10.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검토의견 반영여부 검토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부터 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3호의 “지번까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 6. (생략)</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대</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p> <p>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① -----</p> <p>-----</p> <p>----- · <u>생년월일</u>, -----</p> <p>-----</p> <p>-----</p> <p>-----.</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p> <p>-----</p> <p>-----<u>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p> <p>-----</p> <p>-----</p> <p>-----</p>

	<p>-----  -----  -----  -----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p> <p>-----  -----  ----- <u>생년월일을</u> -----  -----.</p> <p>③ (현행과 같음)</p>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회 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u>자로</u>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의 구성) ①----- ----- ----- ----- <u>사람으로</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 <u>사람</u> ----- -----.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1. -----
2. 군 의원	2. -----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u>자</u>	3. ----- ----- <u>사람</u> -----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u>자</u>	4. ----- ----- <u>사람</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수 귀하

※ 작성요령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개 정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b>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b>			
주민투표 청구요지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u>주민 등록 번호</u>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u>생년 월일</u>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u>주민 등록 번호</u>		성명	(서명 또는 날인)	<u>생년 월일</u>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b>거창군수 귀하</b>				<b>거창군수 귀하</b>			
<p>※ 작성요령</p> <p>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p> <p><u>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u></p> <p>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p>※ 작성요령</p> <p>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p> <p><del>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del></p> <p>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현 행	개 정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b>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b>																																																						
주민투표 청구요지	주민투표 청구요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청구인 대표자</td>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15%;">생년 월일</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able>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청구인 대표자</td>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15%;">생년 월일</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able>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15%;">(서명 또는 날인)</td> <td style="width: 15%;">생년 월일</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성 명</td> <td style="width: 15%;">(서명 또는 날인)</td> <td style="width: 15%;">생년 월일</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able>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15%;">(서명 또는 날인)</td> <td style="width: 15%;">생년 월일</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able>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거 창 군 수 (인 )</b></p>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거 창 군 수 (인 )</b></p>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del>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del></li> <li>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del>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del></li> <li>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현 행	개 정
<p>[별지 제5호서식]</p> <p>(청구인서명부의 표지)</p> <p>(                    ) 주민투표의 청구</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구 인 서 명 부</b></p> <p>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서명주민수 :                            명</p> <p>○○ 읍·면(○책 중 ○권)</p> <p>※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p> <p><b>※ 작성요령</b></p> <p>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 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 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p> <p>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p>	<p>[별지 제5호서식]</p> <p>(청구인서명부의 표지)</p> <p>(                    ) 주민투표의 청구</p> <p style="text-align: center;"><b>청 구 인 서 명 부</b></p> <p>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서명주민수 :                            명</p> <p>○○ 읍·면(○책 중 ○권)</p> <p>※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p> <p>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p> <p><b>※ 작성요령</b></p> <p>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 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p> <p>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p>

##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

##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

현 행					개 정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b>주 민 투 표 청 구 서</b>					<b>주 민 투 표 청 구 서</b>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수 귀하				
<b>※ 붙임서류 : 관련 자료</b> <b>※ 작성요령</b>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u>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u>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b>※ 붙임서류 : 관련 자료</b> <b>※ 작성요령</b>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del>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del>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현 행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 붙임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개 정

[별지 제7호서식]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 붙임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관계법령

### □ 주민투표법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8.7]]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시행일 2014.8.7]]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13.8.6] [[시행일 2014.8.7]]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시행일 2016.1.1]]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6.1.1]]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6.1.1]]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조정
  - 본 청(6급 증원 3명) : 행정 1, 행정·농업·녹지·시설 1명, 행정·공업·시설 1명
  - 직속기관(6급 증원 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1명
  - 사업소(6급 감원 1명) :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1명
  - 본 청(7급 증원 1명) : 행정·사회복지·시설 1명
  - 본 청(7급 감원 2명) : 행정 1명, 행정·시설 1명
  - 사업소(7급 감원 1명) : 행정·사회복지·시설 1명
  - 직속기관(8급 감원 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1명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imf1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1.
제 출 자	행정과장

###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인원을 대형사업 추진부서 정원으로 증원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반직 6급 정원 증원 4명(안 별표)

- 본청 6급(증3) : 85명 → 88명(행 1, 행·농·녹·시 1, 행·공·시 1)
- 직속기관 6급(증1) : 22명 → 23명(보·의·간 1)

#### 나. 일반직 6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사업소 6급(감1) : 11명 → 10명(행·세·사·농 -1)

#### 다.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7급(증1) : 97명 → 98명(행·복·시 -1)

#### 라. 일반직 7급 정원 감원 3명(안 별표)

- 본청 7급(감2) : 98명 → 96명(행 -1, 행·시 -1)
- 사업소 7급(감1) : 15명 → 14명(행·복·시 -1)

#### 마. 일반직 8급 정원 감원 1명(안 별표)

- 직속기관 8급(감1) : 34명 → 33명(보건·의료·간호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11. . ~ 15. 12.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7.]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4.7., 일부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현행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지원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 나.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행화(안 제9조)
  - 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화(안 제10조)
  - 라.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신설(안 제13조)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편번호 50147] 에게 서면이나 메일(gomj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로컬푸드담당 **☎(055)940-81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11 .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 1. 개정이유

- 현행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지원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안 제8조]
  - 운영위원회를 보좌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행화 [안 제9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 운영위원장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담당 과장이 됨
- 운영위원회의 기능 [안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현행화 함
-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신설 [안 제13조]
  -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담당주사가 되며 10인 이내로 구성함
  -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조사 및 단가협의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 5조
- 나. 예산조치 : 미편성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의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2015.11. . ~ 2015.12.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항, 제7항을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⑥ 급식지원센터장은 직영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학교급식 관리책임자가 된다.
- ⑦ 운영위원회를 보좌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담당 과장이 된다. ③ 운영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군수가 구성한다.
  1. 대행수탁기관 관리자
  2. 거창군 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팀장
  3.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4.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5.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6.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7.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
  8.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 ⑤ 회의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간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제10조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별 학교급식 공급가격 심의 결정
3. 월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항 점검
4. 운영인력, 집행, 경비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회의 위원장은 학교급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그 구성은 다음 가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1.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
2.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3명
3. 대행수탁기관 관계자 3명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상정의안 사전 검토 조정
2.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
4.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조사 및 단가협의
5. 식재료의 품질, 규격 등의 협의
6.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협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p> <p>①(생략)</p> <p>②<u>급식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한다)</u> 은-----</p> <p>③ -----<u>위한 실무집행기구로</u> <u>서</u> -----</p> <p>④~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p> <p>①(현행과 같음)</p> <p>②<u>군수는</u>-----</p> <p>③ ----- <u>위 해</u>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u>급식지원센터장은 직영시 농업기술센터</u> <u>소장이 되며,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학</u> <u>교급식 관리책임자가 된다.</u></p> <p>⑦<u>운영위원회를 보좌할 실무협의회를 들</u> <u>수 있다.</u></p>
<p>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p> <p>①----- ----- 20명-----</p> <p>② <u>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되고, 직영시 센</u> <u>터장은 농촌활력과장이 된다.</u></p> <p>③(생략)</p> <p><u>1. 센터장</u></p> <p><u>2. 거창군 교육지원청 보건급식 담당자</u></p> <p><u>3. 군 위생업무 담당자</u></p> <p><u>4. 군내 친환경 생산자 2명</u></p> <p><u>5.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2명</u></p> <p><u>6.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2명</u></p> <p><u>7.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2명</u></p> <p><u>8.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u></p> <p><u>9.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 1명</u></p> <p><u>10. 군내 학교운영위원 2명</u></p> <p><u>11.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3명</u></p> <p><u>1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u></p> <p>④(생략)</p> <p>⑤-----<u>분기당 1회의</u>----- -----</p>	<p>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p> <p>① ----- ----- 10명-----</p> <p>②<u>운영위원장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담당</u> <u>과장이 된다.</u></p> <p>③(현행과 같음)</p> <p><u>1. 대행수탁기관 관리자</u></p> <p><u>2. 거창군 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팀장</u></p> <p><u>3.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u></p> <p><u>4.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u></p> <p><u>5.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u></p> <p><u>6.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u></p> <p><u>7. 군내 교원단체 추천인</u></p> <p><u>8.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u></p> <p><u>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u></p> <p>④(현행과 같음)</p> <p>⑤-----<u>매월 1회의</u>----- -----</p>

현행	개정안
<p>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생략)</p> <p>1. -----</p> <p><u>2.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인원, 사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사항</u></p> <p><u>3.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u></p> <p><u>4. 배송자 추천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u></p> <p>5. -----</p>	<p>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p> <p>1. -----</p> <p><u>2. 월별 학교급식 공급가격 심의 결정</u></p> <p><u>3. 월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항 점검</u></p> <p><u>4. 운영인력, 집행, 경비등에 관한 사항</u></p> <p>5. -----</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3조(실무협의회) ① 제8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급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구성한다.</p> <p>1.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3명</p> <p>2. 거창군 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3명</p> <p>3. 대행수탁기관 관계자 3명</p> <p>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운영위원회 상정의안 사전 검토 조정</p> <p>2.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p> <p>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p> <p>4.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조사 및 단가협의</p> <p>5. 식재료의 품질, 규격등의 협의</p> <p>6.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협의</p>

## 관계법령

### □ 학교급식법

-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11 월 20 일

## 거 창 군 수

### 1.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 개원일 : 2001. 5. 20
- 사업비 : 4,964백만원(국비 1,680, 도비 860, 군비 2,424)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시설규모 :
  - 부지 : 96,912㎡(29,315평, 대지 46,426㎡, 임야50,486㎡)
  - 건평 : 건축면적 1,544.04㎡, 연면적 3,945.03㎡(지하1층, 지상3층)

구분	면적(㎡)	주요시설	비고
계	3,420.85	지하 1층, 지상3층	본관
지하	871.86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1,143.54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2층	1218.7	강당, 강의실, 숙소(8실)	
3층	186.75	지도자숙소(5실)	

## 2. 위탁사무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3. 위탁기간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 (2016. 1. 1 ~ 2019. 12. 31)**

## 4.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거창군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춘 단체

###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으로 제사업이 위탁취소 내지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 기타 행정처분 및 도덕성, 공신력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시 평가에 반영
- 단체, 법인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법인

## 5. 위탁조건

- **운영비 및 관리비 등 제반비용에 관한 비용은 수탁자 전액 부담함.**
- **위탁대상 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수탁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준수.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 준수
    - ※ 위·수탁 계약서 : 붙임참조
  - 선정된 수탁자는 거창군이 제시하는 별도의 계약서에 의한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6.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11. 20. ~ 2015. 12. 4
  - 공고기간 : 2015. 11. 20. ~ 2015. 12. 4
  - 접수기간 : 2015. 12. 2 ~ 2015. 12. 4(당일 18:00까지 접수완료)
- 접수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사무실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가지리 271번지), 접수문의 (☎ 055-940-8702)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 ※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 ※ 신청서 : 붙임참조
  - ※ 신청서 접수후 1개 단체 신청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5조 제4항에 따라 재공고 5일간 실시( 재공고 후에도 1개 단체 신청접수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7.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검토함.
- 선정위원 각자가 『수탁자 선정 심사 평가표』에 수탁응모 신청자별 세부평가 기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을 개인별로 합산함
- 1개의 응모자에 개인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선정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제일 많이 획득한 응모자를 수탁자로 선정함.
- 동점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동일점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최근 청소년관련 평가 우수 성적 반영으로 결정함.
- 수탁 신청자가 『수탁자 선정 심사 평가표』의 총점(100점) 대비 70점 미만시 부적격자로 처리함.
- 수탁자 심사 평가 1순위와 협약체결함이 원칙이며,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약체결함.

## 8. 수탁 응모자 심사 : 2015. 12. 17(목) 오후 14:0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회의실

- ※ 재공고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연기 : 2015. 12.22(화) 오후 14:00

## 9. 수탁 응모자 심사 결과 발표 및 통보

- 발표일자 : 2015. 12 . 18. 17:00
- 통보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10. 위·수탁 협약서 체결

- 일 시 : 수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장 소 : 거창군체육청소년사업소

## 11.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붙임
-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증명 서류 1부
-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8부 제본 제출
  - ※ 계획서 분량은 A4규격, 단면으로 총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대표자 사증 인감계
-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 수련활동장비보유현황

## 12.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청소년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총 6인 내지 9인으로 구성.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5. 12. 17.(목요일) 14:0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회의실
  - ※ 평가순서 추첨(시작 1시간 전)/ 제안발표 : 20분(계획서에 의한 설명방식)
-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 사업계획서평가(100)
  - ※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붙임 배점기준표 참조
- 심사평가 요령 및 점수계산 방식
  - 사업신청자 제안설명(20분이내)
  - 심사자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사업신청대표자가 불참하여 제안설명 불가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13. 기타사항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거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기타 공고 되지않은 사항은 거창군의 결정에 따름.
- 신청서류는 접수 후 제출내용 변경은 불가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자격자로 처리되며, 위탁 후 발견시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무보수로 시설물 등 인수·인계 절차를 마쳐야 함.

## 14. 유의사항

○ 민간위탁시설은 거창군에 귀속된 공유재산이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재산이므로, 지역주민과의 협력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당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바, 사업 계획서 작성시에 지역주민 및 학생, 저소득계층 등이 소외받지 않고 참여할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시켜야한다.

붙임 1. 계약서(안) 1부

2. 재산목록

3. 신청서 1부

4. 청소년수련시설(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탁제안서 1부

5. 수탁자 선정 평가점수 산출기준 및 배점표 각 1부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한다)을 「거창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수탁 운영을 함에 있어, 거창군을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인 『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수탁 계약기간) 위·수탁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을"은 각종 법령에 따라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경비실 등에 매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체결 후 1월 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6조(비용부담) ① 수련원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을"은 전기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 납부보증금으로 일금일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관련 공공요금을 정산하고 "을"에게는 정산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공공요금 납부보증금 일천만원은 해당금액의 보험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이익금) ① "을"은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50% 이상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물 등 시설의 증·개축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운영이익금은 상호 협의하여 그 일부를 거창군 발전 및 거창군 청소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을"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 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는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거창군 월성청소소년수련원  
수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2015. 11.

# 수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 □ 토지 및 건물 목록

◦ 토지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m <sup>2</sup> )	비 고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대지	46,426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15-2번지	임야	50,486	
계		96,921	

◦ 건물 :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연면적 3,945.03m<sup>2</sup>

세 부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세 부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지하 1층	전기실	88.94	2층	본 관 동	분임토의실-1	30.24
	발전기실	15.90			분임토의실-2	32.40
	중앙감시실	25.44			강 당	282.35
	기계실	153.36			도구실	12.82
	유류탱크	21.06			준비실	12.82
	탁구장	157.47			화장실	32.40
	식당+ 주방	227.01			휴게실	40.26
	주방창고	15.48			홀+ 계간실+ 기타	141.45
	창 고	9.05				
	화장실	32.40				
	홀+ 계단+ 기타	125.75				
	소 계	871.86			소 계	584.74

세 부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세 부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1층	본 관 동	다목적취미교실-1	67.32	2층	숙 소 동	숙소11~18	388.80
		다목적취미교실-2	67.32			탈의+샤워실	51.48
		정보자료실	56.70			화장실	60.84
		사무실	79.38			창고	13.32
		지도자실	32.40			홀+계단실+기타	119.52
		상담실	30.24				
		화장실	32.40			소 계	633.96
		홀+계단실+기타	121.32				
		소 계	487.08				
	숙 소 동	숙소1, 숙소10	47.20	3층	본 관 동	전시실	137.52
		숙소2, 숙소9	56.56			방송실	15.39
		숙소3~8	291.60			홀+계단실+기타	33.84
		탈의+샤워실	51.48	옥 탑 층 (연면적 제외)	본 관 동	홀+계단실+기타 (연면적제외)	22.68
		화장실	60.84			소 계	209.43
		홀+계단실+기타	148.78			물탱크실	13.86
소 계		656.46	홀+계단실+기타			22.68	
소 계	656.46	합	소 계	36.54			
합	2,015.40	합	소 계	1,464.67			
합		2,015.40	○ 건물동 합계		3,480.07		
○ 야 외 시 설	소방탑(이륙장)	326.06	□ 건물동+야외시설		4,004.25		
	소방탑(착륙장)						
	합	326.06	□ 연면적:4,004.25-22.68-36.54		3,945.03		

## □ 기계설비 목록

설비명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난방설비	온수보일러	난방전용	200,000kcal	set	1	
		급탕전용	150,000kcal	“	1	
	심야보일러	난방전용		set	5	
		온수전용		set	1	
난방기	온풍난방기	난방 (탁구장)	17,000kcal	set	1	
		난방 (식당)	38,000kcal	set	1	
		난방 (강당)	55,000kcal	set	1	
	웬코일유닛	난방	12,000kcal	기	7	
		난방	8,000kcal	기	4	
탱크	저수조	급수	52,500리터 (3.0×7.0×2.5m)	기	1	
	저탕조	난방	4,000리터	기	1	
	고가수조	소방	4,000리터	기	1	
	유류저장탱크	보일러연료공급	4,190리터	기	1	
	옥외고가수조	화장실, 취사장용	10,000리터	기	1	
펌프	급수펌프		2HP	대	3	
	온수순환 펌프		2HP	대	2	
	기계실배수 펌프		2HP	대	2	
	보일러순환 펌프		1/2HP	대	2	
	온수순환 펌프		1/2HP	대	2	
	급탕순환 펌프		1/2HP	대	2	
헷다	온수순환 헷다	기계실	150×2500L	대	1	
	온수공급 헷다	“	150×2500L	대	1	
FAN	급·배기팬	“	#500	ea	2	
	급·배기팬	전기실	#450	ea	2	
	배기팬	B1 화장실	Ø250	ea	1	
	배기팬	유류탱크실	Ø300	ea	1	
	배기팬	발전기실	Ø350	ea	1	
	급·배기팬	식당	Ø400	ea	2	
	급·배기팬	탁구장	Ø400	ea	4	
	배기팬	화장실	Ø300	ea	12	
	배기팬	욕실	Ø73	ea	4	
	배기팬	야외화장실	Ø300	ea	6	
	급·배기팬	강당	Ø400	ea	4	
	배기팬	물탱크실	Ø300	ea	1	
암반관정		급수	심도100m	m3/일	95	

□ 위생설비 목록

세 부 시 설 명		수량	비고
지하 1층		□ 2개소 ◦양변기 6 ◦소변기 3 ◦세면기 6	
1층	본관동	□ 2개소 ◦양변기 6 ◦소변기 3 ◦세면기 6	
	숙소동	□ 6개소 ◦양변기 15 ◦소변기 5 ◦세면기 16	
		샤워실	□ 2개소 ◦샤워기 16
2층	본관동	□ 2개소 ◦양변기 6 ◦소변기 3 ◦세면기 6	
	숙소동	□ 2개소 ◦양변기 11 ◦소변기 5 ◦세면기 12	
		샤워실	□ 2개소 ◦샤워기 16
3층	본관동	□ 2개소 ◦양변기 2 ◦샤워기 2 ◦세면기 2	

□ 무대설비 목록

설비명	용도	규격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프랭카드		7,500L	면	1	1	1	
커텐		10,200W×5,000H	set	1	1	1	
태극기		1,800W×1,200H	면	1	1	1	
영화스크린		6,000W×4,700H	면	1	1	1	
스포츠라이트	무대조명	F.S 6" HL 1KW	set	9	9	9	
스포츠라이트	무대조명	.V 8" HL 1KW	set	6	6	6	

□ 소방장비 목록

설비명	용도	규격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옥내소화전주펌프	소방급수	7.5마력 400rm (다단터빈)	대	1	1	1	
옥내소화전충압펌프	소방급수	3마력 30rm(웨스코형)	대	1	1	1	
옥내소화전함	소화		대	9	9	9	
자동확산 소화기	소방		set	4	4	5	
ABS분말 소화기	소화	3.3kg	기	23	23	43	
ABC분말 소화기	소화	20kg	기	1	1	1	
살수헤드	소화	하향식	EA	28	28	28	
방화문샷타	소방		EA	3	3	3	

## □ 전기설비 목록

설비명	용도	규격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비상 발전기	비상발전	380/220V 50KW (반자동)	대	1	1	1	
회 전 위상변환기	단상전력 → 삼상변환	30마력	대	2	2	2	
		10마력	대	2	2	2	
		7.5마력	대	1	1	1	
수·배 전 반			면	25	25	25	
전 등	조 명		set	546	546	546	
가 로 등	조 명	나 트 림	set	31	31	31	
진입로 가로등	조 명	나 트 림	set	8	8	8	

## □ 통신설비 목록

설비명	용도	규격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공청안테나		U.HV.LV	set	1	1	1	
스 피 커	방 송	3W(천정형)	개	73	73	73	
		10W(벽부형)	개	5	5	5	

## □ 정화조 설비 목록

설비명		용도	규격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기	루츠부로워		80A×5.5kw	조	2	2	2		
	소포펌프		50A×1.5kw	조	2	2	2		
	유량조정펌프		80A×0.75kw	조	2	2	2		
	배수펌프		80A×2.2kw	조	2	2	2		
	필터공급펌프		50A×1.5kw	조	2	2	2		
	슬릿지 이송펌프		50A×1.5kw	조	2	2	2		
계	자동탈착장치		TO-50	조	3	3	3		
	자동탈착장치		TO-80	조	1	1	1		
	에어리프트 펌프		65A×25A	조	1	1	1		
	염소약품펌프 &탱크		60cc/min×40w ×2col/cap	조	1	1	1		
	방진가대		5hp이하	조	3	3	3		
	장	V-NOTCII		500W×1200L ×600H	조	1	1	1	
조목스크린			600W×600L ×10-20mm	조	2	2	2		
자동스크린			10mm×0.4kw	식	1	1	1		
감속기			0.265RPM ×0.4kw	식	1	1	1		
모래여과기			Ø800×1530H	식	1	1	1		
활성탄여과기			Ø800×1530H	식	1	1	1		
비	급기웁		#2S×1.5kw	조	1	1	1		
	배기웁		#2S×3.75kw	조	1	1	1		
	BIO -REACTOR		HBR-50S, HBR-25W	식	1	1	1		
	전기 설비	MCC PANEL		육내방수형	식	1	1	1	
		수위조절기		SQ-4	SET	2	2	2	
		전등시설		100W (내압방폭등)	개소	8	8	8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탁제안서(예시)

### 목 차 (안)

#### I.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 II. 수탁기관의 현황

1. 기관의 일반 현황
2. 기관의 주요 실적
3. 기관의 재정 현황

#### III.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

#### IV. 사업운영계획

1. 목표체계
2. 사업계획
3. 청소년참여계획

#### V. 시설경영계획

1. 조직운영계획 (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포함)
2. 시설관리계획
3. 재정운영계획
4. 시설홍보계획
5.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6.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7. 경영윤리실천 계획
8. 기관평가개선 계획

#### VI. 지역협력계획

1. 지역기관 협력계획

2. 지역자원 활용계획
3.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참고자료]

1. 기관 인력 현황 자료
2. 숙박시설 종사(예정)자 현황 자료
3. 기관의 사업실적 자료
4. 기관의 재무현황 자료
5. 기차에 대한 평가 자료(있을 경우)
6. 기타 부문별 입증(설명) 자료

**수탁자 선정 평가점수 산출기준(100점 만점)**

(1) 사업계획서 평가(100점)

심사기준	배점	평점기준
<b>(1) 수탁기관</b>	<b>20</b>	
<b>① 기관의 운영기반</b> [5점] 아주 양호 [4점] 양호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아주 미흡	<b>5</b>	○ 기관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기관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b>② 사업수행 실적</b> [15점] 아주 양호 [12점] 양호 [8점] 보통 [5점] 미흡 [1점] 아주 미흡	<b>15</b>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 사업 수행의 전문성
<b>(2) 시설에 대한 이해</b>	<b>15</b>	
<b>① 수탁의 목적과 취지</b> [5점] 아주 양호 [4점] 양호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아주 미흡	<b>5</b>	○ 수탁목적의 타당성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b>② 중장기 발전 전략</b> [10점] 아주 양호 [8점] 양호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아주 미흡	<b>10</b>	○ 중장기 발전 방향의 타당성 ○ 발전전략과 계획의 구체성

심사기준	배점	평점기준
<b>(3) 시설운영계획</b>	<b>65</b>	
<b>① 사업운영계획</b> [25점] 아주 양호 [20점] 양호 [13점] 보통 [5점] 미흡 [2점] 아주 미흡	25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 ○ 청소년참여 계획의 적절성
<b>② 시설경영계획</b> [25점] 아주 양호 [20점] 양호 [13점] 보통 [5점] 미흡 [2점] 아주 미흡	25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 시설·설비 관리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이용활성화 방안의 타당성
<b>③ 지역협력계획</b> [15점] 아주 양호 [12점] 양호 [8점] 보통 [5점] 미흡 [1점] 아주 미흡	15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

(2) 부적격 기준

심사기준	평점	평점기준
과거 유사시설 위탁운영 시 귀책사유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계약(협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건당 20점 감점		○ 운영부실 여부 등 ※ 관련기관 조회로 해당여부 확인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 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심의위원 성 명	(서명)	심의위원장 서 명	(서명)
------	--	-------------	------	--------------	------

평가 기준	세부항목	평가 항목	배점	점수
<b>총점</b>			<b>100점</b>	
<b>수탁기관 (20점)</b>	기관의 운영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li> <li>○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li> <li>○ 기관의 재무구조의 적정성</li> </ul>	5	
	사업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li> <li>○ 사업 수행의 전문성</li> </ul>	15	
<b>시설에 대한 이해 (15점)</b>	수탁의 목적과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목적의 타당성</li> <li>○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li> </ul>	5	
	중장기발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발전 방향의 타당성</li> <li>○ 발전전략과 계획의 구체성</li> </ul>	10	
<b>시설운영 계획 (65점)</b>	사업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타당성</li> <li>○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li> <li>○ 청소년참여 계획의 적절성</li> </ul>	25	
	시설경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li> <li>○ 시설·설비 관리의 적절성</li> <li>○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li> <li>○ 이용활성화 방안의 타당성</li> </ul>	25	
	지역협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li> <li>○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li> </ul>	15	